



『매일플러스기업통장』요약 상품설명서

■ 기본 정보

최고금리	연0.35%	'23.4.10 현재 기준
		※ 자세한 적용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
가입대상	법인, 개인기업, 법인으로 보는 '	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단체
가입금액	제한없음	
가입계좌수	제한없음	
무통장신규	가능	
계약해지	가능	영업점에서 해지 가능
예금자보호	_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
		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
		합산) 보호됩니다.

■ 유의 사항

입금 및 지급	입금 및 지급은 수시로 허용되며, 지급의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건부터 지급 처리(선입선출법 적용)
휴면예금	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

※ 본 요약 상품설명서는 「매일플러스기업통장」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-425호(2023.04.10~2025.04.09)



『매일플러스기업통장』상품설명서

- ♣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♣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♣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 : 매일플러스기업통장

■ 상품특징 : 금액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하는 시장금리연동형 기업자유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						
가입대상	• 법인, 개인기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						
가입계좌수	• 제한없음						
상품유형	• 기업자유예금						
거래방법	신규 : 영업점해지 : 영업점						
	이자결산 기준일		원가일		이자계산기간		
이자 지급시기	지급시기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넷째 토요일		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		예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지급일)전날까지의 기간		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(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•출금•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. 						
기본이자율	구분	5천만원미만	5천만원이상	1억원이상	5억원이상	10억원이상	
	이자율 연0.01% 연0.05% 연0.10% 연0.20% 연0.35% ※ 고시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						

2 거래 조건 (계속)

구 분		내 용	Imbar
이자 산출근거	•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(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)에 이자 지급		
예금자보호여부	이 예금보업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교 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세제혜택	불가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(일반과세)	
양도 및 담보제공	불가	•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	
거래중지	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 제한 ①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며,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며,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며,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		
계약해지방법	• 영업점 에서	해지 가능	
기존계좌 전환	• 가능		
휴면예금 및 출연	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 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 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		
연계•제휴서비스	• 해당사항없	le	

3 유의 사항

•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아이엠뱅크

- 이 예금은 아이엠뱅크 수신기획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66-5050, 1588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im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부록] 예금 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		
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		
압류	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		
	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		
7LOF =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		
가압류	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		
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		
질권설정	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		
	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/적금, 채권		
	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		
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		
አ _ብ	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		
출연	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		
	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		
74 71 71 71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		
경과기간	☞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		